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웅식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 513 호

다. 발의일자 : 2019. 3. 28.

라. 회부일자 : 2019. 3. 29.

2. 제안이유

- 풍수해, 감염병, 미세먼지,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용 부서를 재난관리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를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 가.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계정의 기금운용관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안 제6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물순환안전국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안 제8조)
- 다.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안 제8조)

라. 위원회의 재난계정 부문 간사 및 서기를 각각 안전총괄과장 및 안전총괄과 기금담당사무관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안 제8조)

바. 그 밖에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용 부서를 기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변경함으로써 풍수해, 감염병, 미세먼지,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에 설치되어,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표 1]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순조성액(A-B)	누 계
	계	출 연 금	기 타			
1997	23,075	22,710	365	1,108	21,967	21,967
1998	29,549	26,011	3,538	22,750	6,799	28,766
1999	42,250	36,587	5,663	17,539	24,711	53,477
2000	43,816	38,413	5,403	10,648	33,168	86,645
2001	55,470	40,544	14,926	73,262	- 17,792	68,853
2002	53,579	43,175	10,404	25,289	28,290	97,143
2003	57,357	49,461	7,896	23,167	34,190	131,333
2004	64,736	58,197	6,539	31,095	33,641	164,974
2005	72,743	65,807	6,936	18,969	53,774	218,748
2006	77,702	69,444	8,258	49,510	28,192	246,940
2007	83,024	70,092	12,932	42,349	40,675	287,615
2008	87,339	73,118	14,221	86,739	600	288,215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출 연 금	기 타			
2009	89,567	78,052	11,515	98,779	- 9,212	279,003
2010	181,289	82,225	99,064	161,531	19,758	298,761
2011	210,490	81,607	128,883	197,373	13,117	311,878
2012	111,290	80,305	30,985	212,887	- 101,597	210,281
2013	93,389	86,546	6,843	53,501	39,887	250,168
2014	85,091	78,387	6,704	132,597	- 47,506	202,662
2015	90,967	86,532	4,435	42,333	48,634	251,296
2016	95,148	90,708	4,440	40,289	54,859	306,155
2017	108,935	100,500	8,435	23,243	85,692	391,847
2018	122,252	113,901	8,351	146,822	-24,570	367,276
2019	136,104	126,742	9,362	147,006	-10,902	356,374

○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수입부문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도 계획대비 42억 76백만원(0.86%) 증가한 5,033억 8천만원 규모이고, 이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1,470억원 규모임([표 2] 참조).

[표 2] 2019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8년 수입액	2019년 수입액	증감 (증감률)	항목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	증감 (증감률)
계	499,104	503,380	4,276 (0.86)	계	499,104	503,380	4,276 (0.86)
일반회계 출연금	113,901	126,742	12,841 (11.3)	고유목적 사업비	146,816	147,000	184 (0.13)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	기본경비	6	6	-
예탁금 원금회수	0	0	-	예치금	352,282	356,374	4,092 (1.16)
예치금회수	376,852	367,276	△9,576 (△2.5)	기타지출	0	0	-
이자수입	8,201	9,212	1,011 (12.3)				
기타수입	150	150	-				

-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1,470억원 중 재난예방사업에 1,100억원,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에 350억원, 연구용역사업에 20억원을 책정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2019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운용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비용자성 목적사업비	계		147,000
	재난예방사업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110,000
	응급복구사업	재난 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35,000
	연구용역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000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관리운영 부서 변경(안 제6조제1호나목, 안 제8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

- 안 제6조제1호나목, 안 제8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영 부서를 기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또는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용도(붙임 참조)로 사용되는데, 안전총괄실은 현재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¹⁾하고 있고,

-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 주체를 안전총괄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6조제1호나목, 안 제8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기금운용관</p> <p>가. 구호계정 - 시의 <u>복지본부장</u></p> <p>나. 재난계정 - 시의 <u>물순환안전국장</u></p> <p>2. (생략)</p>	<p>제6조(기금관리공무원)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p> <p>가. _____ <u>복지정책실장</u></p> <p>나. _____ <u>안전총괄실장</u></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u></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이 된다.</u></p> <p>④ _____</p> <p>_____ <u>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진흥
 2.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
 3. ~ 8. 생략

특별”이라 함)」상 제3종시설물(시특별 제8조)로 편입(법률 제14545호, 2017. 1. 17.)함에 따라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서 시설을 제외하고 “특정관리대상지역”만으로 그 대상을 변경하게된 것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그동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의 경우 재난예방 차원의 재난관리기금 지원대상이었으나 시특별에 편입됨에 따라 일반예산 지원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시특별상 법정외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제4호라목의 경우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30.)됨에 따라 “긴급안전조치”를 “안전조치”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8호 또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94호, 2013.8.16.)되면서 기존 기본법 제2조제1호다목2)이 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3)에 통합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
- 다음으로 안 제13조는 기본법 시행령이 2차례 개정(1차 2010.12.7., 2차 2011.6.27.)되면서 준용되던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가 1차 전문개정 시 제74조제1항제7호로, 2

2)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차 전문개정 시 제74조제1항제8호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안 제5조제2항제4호라목, 안 제5조제2항제8호, 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용도) ① (생 략)	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u>기본법 시행령 제74조</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_____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1 _____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u>특정관리대상시설</u>) 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나. _____ (<u>특정관리대상지역</u>) 제2항에 따른 지역 -----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4 _____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u>긴급안전 조치</u>)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라 _____ <u>안전조치</u>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u>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u>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u>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u>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출조건) <u>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u> 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출조건) <u>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u> ----- _____ ----- .

다. 용어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호가목, 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8조제4항제1호, 안 제14조)

- 먼저, 안 제5조제2항은 약어에 대한 규정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조례 운용 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6조제1호가목, 안 제8조제3항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안 제8조제4항제1호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940호, 2018. 12. 31)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다음으로 안 제7조제4항은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14조는 조 제목인 “준용”이 조문내용과 맞지 않아 “기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호가목, 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8조제4항제1호, 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용도) ① (생 략)	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u>기본법 시행령 제74조</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p> <p>다. ~ 자. (생략)</p> <p>2.·3. (생략)</p> <p>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 다. (생략)</p> <p>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p> <p>5. ~ 7. (생략)</p> <p>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9.·10. (생략)</p>	<p>나. _____ (특정관리대상지역)제2항에 따른 지역 _____ _____</p> <p>다. ~ 자.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4. _____ _____</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_____ 안전조치 _____</p> <p>5. ~ 7. (현행과 같음)</p> <p>8 기본법 제3조제1호 _____ _____</p> <p>9.·10.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기금운용관</p> <p>가. 구호계정 - 시의 복지본부장</p> <p>나. 재난계정 - 시의 물순환안전국장</p> <p>2. (생략)</p>	<p>제6조(기금관리공무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1. _____</p> <p>가. _____ 복지정책실장</p> <p>나. _____ 안전총괄실장</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_____ _____ 서울특별시회 _____ _____</p>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 1. <u>재정관리담당관</u> ,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2. 3. (생략) ⑤·⑥ (생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이 된다. ④ _____ ---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관리담당관 _____ ----- 2.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①·② (생략)	제14조(기타) ①·② (현행과 같음)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권자 변경(안 제8조제4항)

- 안 제8조제4항은 기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부자치단체장)이 위촉하던 것을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임(〔표 6〕 참조).
-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서울시 소속직원이 포함(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되어 있는 데, 「지방자치법」 제105조4)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
- 기본법에서도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시장이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4)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마. 수당 등 지급 근거(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인용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표 7]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p> <p>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p> <p>2.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p>	<p><u>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u></p>

[붙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 용도 규정(조례 제5조)

[붙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 용도 규정(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